

국방혁신 4.0, 다시 도약하는 방위사업청



방 위 사 업 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요청(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신청·추천 (재연장)공고)

1. 관련근거

- 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7조(포상 및 신고자 보호 등)
- 나. 기술보호과-2300('22.5.27.)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요청(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신청 추천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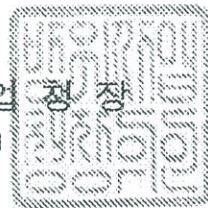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22년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신청·추천을 위한 (재연장) 공고문의 홈페이지 게시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게시명칭 : '22년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신청·추천 (재연장)공고
- 나. 공고기간 : '22.5.27.(금) ~ 8.5.(금)
- 다. 협조사항
 - 1) 대변인실 : 공고문 청 홈페이지 게시
 - 2)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방산보안 앱을 이용한 회원사 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3)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홈페이지 게시

붙임 : '22년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신청·추천 (재연장)공고. 1부. 끝.

방 위 사 업 청 장

수신자 대변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육군소령 양동신 과장 전결 2022. 7. 18. 김주철

협조사

시행 기술보호과-3130 (2022. 7. 18.) 결수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http://www.dapa.go.kr

전화번호 02-2079-6882 팩스번호 02-773-7587 / dapadream@korea.kr / 대국민 공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붙임#1】

방위사업청 공고 제2022 - 83호

22년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신청·추천 (재연장) 공고

방위산업기술보호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유공자·단체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연장)공고하오니 대상자 또는 대상단체를 적극 발굴하여 신청 또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8일

방위사업청장

1. 포상 규모

가. 정부포상,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 표창 총 10~12매 / 포상금 총 1000만원

상훈명	포 상 규 모 및 대 상	비고
정부 포상	0~2매 (관계기관, 산·학·연 단체 및 개인)	
국방부장관 표창	3매 (관계기관, 산·학·연 단체 및 개인)	
방위사업청장 표창	7매 (관계기관, 산·학·연 단체 및 개인)	

* 심사 결과 및 기관 상황에 따라 포상 종류와 배정 수량, 인원, 포상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추천) 자격

가. 「정부포상업무지침」과 「방위사업청 표창규정」에 규정된 추천 제한 대상에 해당(별지 1 참조)되지 아니하며 다음의 자격 중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자

- 1).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2).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신고 등으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3). 방위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4). 그 외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3. 추천 방법

가. 신청 및 추천 기간 : 2022. 5. 27.(금) ~ 8. 5.(금)

나. 제출기간 : 2022. 5. 27.(금) ~ 8. 5.(금)

- 1).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2). 신청(추천)을 위한 해당 양식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http://www.dapa.go.kr>) 업무·정책>업무자료실>업무게시판>방위산업기술보호 지원 또는 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 신청 및 추천 접수처(우편접수만 시행)

- 1). 우편접수(등기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519호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포상담당자 앞 (봉투에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 포상 신청 또는 추천” 표기)
- 2). 우편물은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되거나 도착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서류

- 1). 포상·포상금 추천서 또는 신청서 1부 (별지 2, 3 양식)
 - ※ 포상·포상금 수상대상자가 본인 또는 당해단체인 경우는 별지 2 신청서를 작성하고, 타인(해당단체 소속원일 경우도 포함) 또는 타단체를 추천하는 경우는 별지 3 추천서를 작성
- 2). 공적조서 1부(별지 4 양식) : 예시에 따라 작성
- 3). 상별기록 확인서 1부(별지 5 양식)
- 4). 장관 및 청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별지 6 양식)
- 5). 실적서 및 기타 증빙자료 등(별지 7 양식, 증빙자료는 실적서 다음에 첨부)
 - ※ 모든 제출서류는 1부씩 제출하고, 제출서류 일체를 전자파일(HWP 및 PDF)로 변환하여 담당자 e-메일(dapadream@korea.kr)로 별도 제출
 - ※ 서류제출시 편철순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선정절차 및 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포상 공고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 포상 신청·추천 공고	5. 27.(금)
↓		
신청서 접수	신청서 또는 추천서 접수	~ 8.5(금)
↓		
서류 확인	제출서류 확인(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 확인)	8월 2주
↓		
선정심사 위원회	포상대상자 선정심사 실시	8월 3주
↓		
포상대상자 확정	정부포상,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포상심의회	~ 12월
↓		
시상	방위사업청	~ 23.1월(예정)

* 일정은 정부포상,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포상 확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선정방법

가. 단체 및 개인이 제출한 신청서(추천서)에 대해 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방위산업기술보호에 대한 공적사항을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 표창 대상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선정

6. 심사기준

가.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개발·제도개선의 적절성 및 효과성

나.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로 인한 공익기여도

* ‘신고’에 대한 공익기여도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21조~24조의 행위를 대상으로 함

다. 방위산업기술보호 분야 강연·논문·기고·아이디어 발굴 및 홍보활동 실적

라. 방위산업기술보호 관련 기술개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경제발전 기여도

마.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경우 등

※ 위 항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7. 유의사항

- 가.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 표창대상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적정한 포상 대상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후보자가 포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로 포상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표창대상 선정결과는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 다. 추후 허위사실의 기재 및 포상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포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라. 기타 문의사항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포상담당자(양동신)에게 (☎02-2079-6982)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

【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 및 제한 기준 】

1. 수공기간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

*수공기간 : 재직기간이 아닌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해 기여한 공적 기간을 의미함

2. 재포상 금지기간

- 가.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나.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 훈장을 받은 경우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라. 포장을 받은 경우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3. 포상추천 제한사유(민간인)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나. 형사처분

- 1)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7)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 「민중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중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중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중화운동 관련자가 민중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하다.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1)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2)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3)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마.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1)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2)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3)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1)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2)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사.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아.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4. 포상추천 제한사유(공무원)

가.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나. 형사처분

1)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다.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 1)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2)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 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 나.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다.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라.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5. 훈격결정(공무원)

- 가. 재직공무원 및 추서 대상자에 대한 포상 훈격은 공적과 퇴직포상의 직급(직위)별 훈격 결정기준에 준하여 훈격을 결정함. 다만, 다음과 같이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직급 또는 직위 등에 관계없이 공적에 합당한 훈격을 결정할 수 있음

-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국가안위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자신을 희생하는 등 사회전체에 귀감이 되는 자
-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한 기술혁신 또는 국가 중요정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상과 같다고 인정하는 자

- 나. 해당 공적에 필요한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 국방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상 신청(추천) 제한대상 】

가. 장관표창 또는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고 1년(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 ① 무공자, 간첩검거자, 의사.상자,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가중요 정책사업(국제행사, 단기사업 제외)유공자, 우수창안자
- ② 既 포상공적과 동일분야 공적이 아닌 경우
- ③ 상장(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수상자는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추천 가능

※ 장관표창 수상자부대는 1년 미경과되어도 정부포상은 추천 가능

나. 장관 이상의 부대(기관) 표창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대, 다만 既 포상공적과 동일분야의 공적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다.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추천가능 (공품·항응수수, 공금형령·유용, 성범죄,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주요 비위는 징계 사면 또는 말소시에도 추천 불가)

라. 1년 이내에 복무 및 보안관련 경고장 또는 주의장을 발부 받은 자. 단, 1년 이내 복무자중 상기 가. ①항은 수여 가능

마.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바. 재직중의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자 중 공적이 현저한 자는 추천 가능(주요 비위는 제외)

사.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아.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자.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추천된 자

차. 공적이 미흡한 자

【방위사업청 표창규정 상 신청(추천) 제한대상】

1. 표창 수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이내에 동일한 공적이나 성과로 방위사업청장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2. 공적을 보인 사업이나 업무에 대해 감사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적을 단정할 수 없는 경우
3. 최근 2년 이내에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단,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성희롱, 음주운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요비위는 기한 경과시에도 추천 불가
4. 최근 1년 이내에 경고 및 주의 처분자
5. 최근 1년 이내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처분된 경우(공적이 인사자료 활용 처분의 대상 업무와 무관한 경우는 제외)
6. 갑질, 근무불성실 또는 각종 비위에 관련되어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7.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8.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9. 정부포상업무지침 또는 장관표창업무지침 상 추천제한사항에 해당되는 자

별지 2

방산기술보호 유공자 포상·포상금 신청서

신청인	② 성 명 (법인 등록명)	(한 글) 홍길동	(한 자) 홍길동
	③ 생년월일 (법인 설립 등기일)	1969. 6. 9.	④ 전화번호 (사무실) 051-000-0000 (휴대폰) 010-0000-0000
	⑤ 소속 및 직위 (법인 또는 사업장 대표자)	000000000 주식회사 0000팀 팀장(부장)	
	⑥ 이 메 일	atteugeo@hotmail.com	

⑦ 신청사유
(공적내용)

예시) 2022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0000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며.....
특히 ... 0000 00강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포상 및 포상금을 신청함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보호 포상(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 위 사 업 청 장 귀하

별지 3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 포상·포상금 추천서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① 성 명 (법인 등록명)	(한 글) 홍 길 동 (한 자) 洪 吉 洞		
	② 생 년 월 일 (법인 설립 등기일)	1969. 6. 9.	③ 전화번호	(사무실) 051-000-0000 (휴대폰) 010-0000-0000
	④ 소속 및 직위	00000000 주식회사 0000팀 팀장(부장)		
	⑤ 이 메 일	atteugeo@hotmail.com		
	⑥ 추 천 사유 (공적내용)	예시) 2022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0000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이 기대 하며..... 특히 ... 0000 00강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포상 및 포상금 수여 대상으로 추천함		
추천인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보호 포상(포상금) 유공자로 추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년 월 일 </div> 추천기관명 000 주식회사 기 관 장 대표이사 0 0 0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margin-top: 10px;"> </div> 방 위 사 업 청 장 귀하			

별지 4

공 적 조 서

①성 명	한 자		
②주민등록번호	000000-0XXXXXX * 뒤 6자리 입력 불필요	③군 번 (군인의 경우)	
		④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⑤주 소			
⑥직 업		⑦소 속	
⑧직 위		⑨직급·계급	
⑩추천훈격	* 작성불필요	⑪추천순위	
⑫공적분야		⑬공적기간	00년 00월
⑭공적요지(50자 이내) · 특수기호 및 그림, 표 입력 안됨 개조식 50조이내 작성 ※작성양식 미준수시 상훈시스템에 입력이 안되며, 그에 따른 포상수여 불가 등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조 사 자			
⑮소 속	(추천기관의 인사담당부서 부서장)		
⑯직위(직급·계급)		⑰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뒷면)

⑱주요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⑲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포장별로 기록) - 최근2년 이내 장관포창 이상만 기재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⑳공 적 내 용(반드시 2500자 이상 작성)	
<p>작성요령 및 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피추천인의 공적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u> - 특수기호 및 그림, 표 입력 안함 - <u>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별도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 내용 면에 '기술' 해야 함</u>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자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p>*공적사항 기재시 단편적 내용이 아닌 서술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한글(HWP) 문서로 작성시 글자포인트 10, 줄간격 160%로 2,500자 이상(작성용지 A4 기준 3장)으로 작성하여야 상훈 등록이 되므로 각별히 주의</p>	

별지 5

상 별 기 록 확 인 서

소 속	직급 (계급)	생년 월일	성 명 (한자)	직 책	포 상 기 록 (차관급표창 이상)			처 별 기 록				비 고	
					수여훈격	발령 번호	수여일자	별목	비행건명	징계권자	시행일자		
													- 현재 진행 중인 상별 관련 사항

위 사항은 사실과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22

추 천 대 상 자	직책	계급	성명	(서명)
확인자(인사팀장)	직책	계급	성명	(서명)

별지 6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 포상 후보자 추천에 대한 동의서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 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 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 국방부장관 표창 업무지침 및 방위사업청 표창규정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2.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적심사, 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별지 7

방위산업기술보호 분야 예산절감 및 기술개발 등 실적서					
성명	소속기관명	부서명	직위	이메일	연락처 (핸드폰 명시)
구분	<input type="checkbox"/> 예산절감 분야 <input type="checkbox"/> 기술개발 분야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간	(시작년도)~(종료년도)				
비용					
비용 부담	<input type="checkbox"/> 업체투자 <input type="checkbox"/> 정부.업체 공동투자 <input type="checkbox"/> 정부투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동연구자	소속/직위	성명	휴대폰	비고	
첨 단 부 문					